

아동건강기본법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28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이주영 · 이준석 · 최수진
천하람 · 황명선 · 김용태
윤재옥 · 유용원 · 서지영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와 태아부터 성년까지의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의 보건복지를 위한 현행 법령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을 놓칠 수 있으며,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려 함.

아동건강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보건의료”란 임신, 출생, 성장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관한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보건의료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 복지 등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주산기”란 임신 20주 이후 또는 출생 체중이 500g 이상으로 출산 후 28일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건강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아동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이하 “아동 건강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장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아동에게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아동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누구나 건강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아동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아동 건강정책과 연

제하여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아동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아동이 성장과정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의 책무)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아동 건강정책에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한 육성에 이바지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건강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 아동 건강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아동 건강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아동건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건강정책심의위원회) ① 아동 건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 건강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 건강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 건강정책의 재정에 관한 사항
5. 아동 건강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 건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아동·소비자·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그 밖에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동 건강정책

제11조(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모, 태아 및 신생아에 대한 주산기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2.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확인 및 질병·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 건강검진의 실시

3. 아동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그 밖의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4. 아동의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교육·홍보·조기발견체계·상담·치료·재활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
 6. 만성질환, 중증질환, 난치성질환 및 희귀질환 아동의 효과적인 질환관리 및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7. 발달지연아동 및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8. 의학적 응급상황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진료서비스의 제공
 9.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질병 예방, 신체활동 장려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
 10. 아동의 외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의 조성
- ② 그 밖에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대 피해 아동 건강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동이 신체건강·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학비 지원, 교육훈련 실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아동 전문보건의료시설의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전문보건의료시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 건강지식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성장 단계별 건강, 영양, 운동 및 양육에 관한 지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건강정보체계 정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학교건강기록 등 아동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동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사망률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정보의 수집·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학술조사연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건강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아동 건강에 관한 학술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아동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보건의

료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아동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 보건의료체계 전담부서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 지사는 아동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